

차 · 별 · 없 · 는 · 사 · 회 · 를 · 열 · 어 · 감 · 니 · 다



# 알기쉬운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이 책의 우측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용 이차원 바코드가 실려있습니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행일 : 20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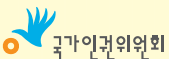
발행인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만화 : 이상윤

제작 : 짧은기획 02) 2264-2015

바코드 : 에이디정보통신(주) 02) 2028-2300



(우)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을지로 1가 16)

대표전화\_ 1331 / 팩스\_ 02) 1225-9812 / 홈페이지\_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이메일\_ [webmaster@humanrights.go.kr](mailto:webmaster@humanrights.go.kr)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1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02

2장 차별의 네가지 유형 ..... 04

- 직접 차별
- 간접 차별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광고에 의한 차별

3장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10

고용 / 교육 /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 사법 · 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 · 부성권, 성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 건강권  
 괴롭힘의 금지 / 장애여성, 장애아동 / 정신적 장애인

4장 차별의 시정과 구제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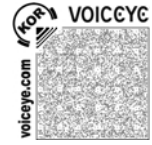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 장애인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의 네가지 유형

## 1.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와 저의 장애는  
상관없어요

자격이  
안되네요

사무직모집

자격조건

신체건강  
용모단정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집에서 쉬지 그래

장애인 주제에  
감히 어딜...

정상인하고  
경쟁이 되겠어?

회사 이미지  
나빠지게시리...

돈 몇 푼 줘서  
보내버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인'이 아닙니다. '정상인'의 반대말은 '비정상인'이니까 말입니다. 우린 모두 '정상'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장애의 유무일 뿐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크하하하~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자구!



이 경기는 토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겠어

차별의 네가지 유형

## 2.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은 부당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물에서 승부를 가리자

이... 이걸  
차별이라고

튜브  
배워요



차별의 네가지 유형

###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잘 잡아봐  
'불우한 이웃'의 느낌이  
딱딱 들도록 말아야



차별의 네가지 유형

## 4.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번 화재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추측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편견... 나는 어떨까요?

- ① 불쌍하다 ② 무능력하다 ③ 가난하다 ④ 도와줘야 한다
- ⑤ 바보다 ⑥ 전생에 죄가 많아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무서워 할 거 없어~  
정신적 장애인과 정신이상자는  
다르니까

옆집 사람이  
정신적 장애인이라...  
무서워~



# 3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고용 (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 여기서 근로관계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 후생,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  
즐거워요~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장애란 없어요!!



기술의 진보는 놀라와  
장애의 벽이 점차  
낮아지는 것 같아

그만큼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할까요...





선생님  
영광 가요~

와글  
와글



장애학생은  
너무 신경쓰여  
사고나면  
다 선생책임이잖아



넌 몸이 불편하니까  
야외수업은 빠져도 돼  
그냥 집에서 쉬렴~



###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교육 (제13조, 제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차저차...  
죄송하지만,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걱~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 드세요!



누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보험 드세요!



# 장애가 있으면 곤란한데...

우리 애  
보험 하나  
들려주세요



장애인은  
무조건  
안됩니다



보험가입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보험가입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달리 대우하거나 거부·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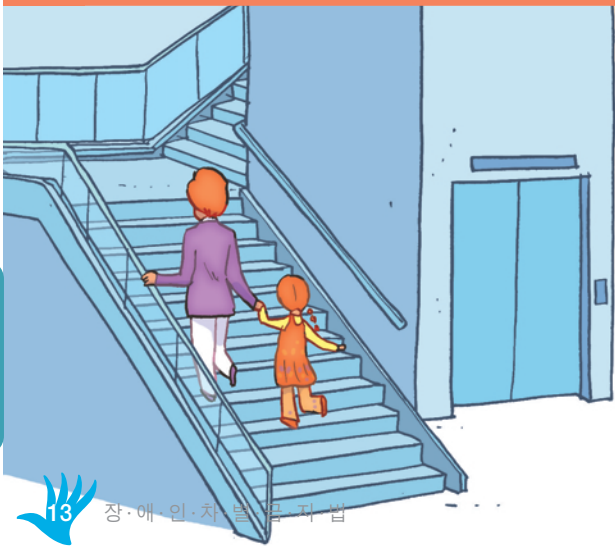
자리  
없다니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제18조)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거부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누구나 갈 수 있죠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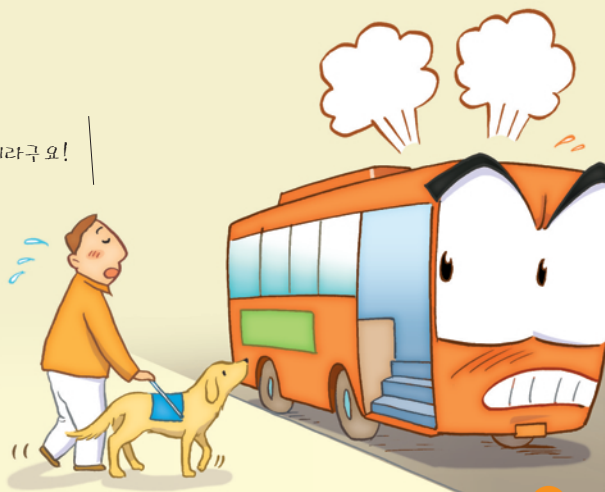
# 이동 및 교통수단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방향이 안맞아서 태울 수 없습니다



그냥 애완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보조견이라구요!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잘 훈련된 개입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보조견의 주의를  
흐트러 시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경일 기념행사



중요한 행사에  
수화통역사가  
없다니...

연설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네...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제21조)

소리로 읽어주는  
음성안내 서비스입니다

내용이 귀에  
속속 들어와요



##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제24조, 제25조)

장애인이 문화 · 예술 · 체육 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엄마, 아바랑  
같이 보니까 정말 좋다~

예전에 장애인들이  
극원에 있어서 불편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나는 공도 있고

점자로 된  
안내책도 있어



진술보조인이 있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사가 전달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사법 · 행정절차 및 참정권 (제26조, 제27조)

해당 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 ·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 키우기  
힘드실 텐데...

죄송하지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모·부성권, 성 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나도 아기 갖고 싶어

난 더이상 키워줄 자식없다.  
그냥 불임수술해 버리자



산부인과



당사자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걱정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잘 할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제30조)

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 · 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내봐도  
손색없는 시설입니다



## 건강권 (제31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와 의료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제왕절개 수술  
해야 합니다

저는 자연분만  
하고 싶어요



쉽게 쉽게하는게  
상책이야...

아니, 왜?  
장애인은 언불입니다!

수술비는 언불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괴롭힘의 금지 (제32조)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됩니다.

심봉사  
눈에 보이는게  
없구만~

눈 뜬장님이  
따로 앉다니까

말조심해!  
듣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기분 나쁘잖아!

'장님', '맹인', '봉사' 등의 단어는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단어의 본래 뜻과는 달리 차별적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을 '병어리', '귀머거리' 등으로 말하면 안됩니다.



키득  
키득



뭐 필요한거  
없습니까?



장애인지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장애여성, 장애아동 (제33조, 제35조)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고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아서 안 되며, 일하는 장애여성은 직장교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 박탈 및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란다  
중요한 건 실력이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장애인 사촌 명의로  
핸드폰 하나 마련했지  
요금도 내가 안냈다구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정신적 장애인 (제37조)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이웃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장애 차별없는 사회의  
시작입니다



# 4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의 시정과 구제

## 1.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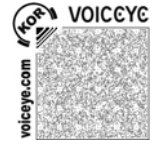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인권전담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 되는 경우, 합의 및 당사자간 조정 또는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2.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 3.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불이행시 3천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3조)



#### 법원의 구제조치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4. 장애인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접수

조사

위원회 결정

권고

이행

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방법

전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전송 02) 2125-9811, 02) 2125-9812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우편/방문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701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불이행

피해자의 신청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법무부

차별행위중지 · 원상회복 · 재발방지

-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
- 반복적 차별행위
-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